

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 련 1836
----------	-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4년 6월 28일
제 안 자 : 행정자치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면서 민간단체 경비 지원 관련 구체적 명시의 필요성 여부 및 유사 조례로의 파급 효과 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시장이 '북한이탈주민의 날'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한정하여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안 제12조의2 중 민간단체 지원 관련 내용(제2항 및 제3항)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함.

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의2(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) 시장은 매년 북한이탈주민의 날에 북한이탈주민 포용과 권익 향상, 남북 주민 간 통합문화 형성 및 통일인식 제고를 위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< 수정안 조문 대비표 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12조의2(북한이탈주</u> <u>민의 날 행사) ① 시</u> <u>장은 매년 북한이탈주</u> <u>민의 날에 북한이탈주</u> <u>민 포용과 권익 향상,</u> <u>남북 주민 간 통합문</u> <u>화 형성 및 통일인식</u> <u>제고를 위하여 기념행</u> <u>사를 실시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시장은 북한이탈주</u> <u>민 지원단체 등 민간</u> <u>단체가 제1항에 따른</u> <u>행사를 추진하는 경우</u> <u>예산의 범위에서 필요</u> <u>한 경비를 지원할 수</u> <u>있다.</u></p> <p><u>③ 제2항에 따른 지원</u> <u>절차 등은 「서울특별</u> <u>시 지방보조금 관리</u> <u>조례」에 따른다.</u></p>	<p><u>제12조의2(북한이탈주</u> <u>민의 날 행사) 시장은</u> <u>매년 북한이탈주민의</u> <u>날에 북한이탈주민 포</u> <u>용과 권익 향상, 남북</u> <u>주민 간 통합문화 형</u> <u>성 및 통일인식 제고</u> <u>를 위하여 기념행사를</u> <u>실시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

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) 시장은 매년 북한이탈주민의 날에 북한이탈주민 포용과 권익 향상, 남북 주민 간 통합문화 형성 및 통일인식 제고를 위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2조의2(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)</u> <u>시장은 매년 북한이탈주민의 날에</u> <u>북한이탈주민 포용과 권익 향상,</u> <u>남북 주민 간 통합문화 형성 및 통</u> <u>일인식 제고를 위하여 기념행사를</u> <u>실시할 수 있다.</u>